

**정치의 원리:
그들이 미국 장로교의 평화, 일치, 그리고 순결에 끼친 공헌**

“미국 장로교의 헌법은 경험과 이론과 크리스찬 은혜의 열매이다.”
(1925년 총회에 보고된 기록, *Part 1. p 61*)

서론 (예비적 견해)

지난 한해동안 저희들은 위원회와 함께 미국의 장로교회의 규례의 변화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역사는 아주 복잡한 것이므로 저희들은 이것을 중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더 간단한 답을 선호하겠지만 간단하지 않은 것을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로교회의 공동체적 삶을 지금까지 끌고온 복잡한 동기들과 원리들을 가능한 정확하게 대표하기 위하여 장로교의 역사 평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은 오랫동안 계속된 발제, 역(逆)발제, 헌의, 수정, 분열, 재연합, 구조조정 등등에 담겨있는 주된 경향들을 관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것들은 신념의 흐름이 되어 장로교회로 하여금 중대한 위기의 때에 특정 정치에 초연하며 정치형태를 단순한 규칙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념의 흐름을 저희는 “긴장과 조화의 문제들” 이라고 부르며, 그 내용들이 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동기를 유발하는 원칙들이 규례 제도를 뒷받침한다고 믿습니다. (1)하나님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삶에 신실함. (2) 교회가 거쳤던 시대와 문화를 바르게 인식함. (3)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의 방향을 설정함.

저희들이 밝힌 “긴장과 조화의 문제들”은 두개의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들은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초대 역사에서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가, 1788년의 새로 만들어진 장로교 총회의 정치형태의 서문에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리”로 불리우는 교회 질서의 원칙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종종 장로교 정치형태는 규칙서로 오해되지만, 정치형태가 1788년에 시작되었고 오늘날도 규칙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뒤에 따라오는 규례서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원리를 상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인 원리는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여러 신념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반드시 서로 반대적이지는 않지만 교회 전체와 개교인의 돌봄과 제자도에 관하여 경쟁적인 두개의 방침 사이를 우왕좌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원리들은 단순한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보다는 균형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해 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보고서에서, 저희는 각 역사적 원리들을 자세하게 상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그 일은 이미 예전의 특별위원회에서 다 했으며¹, 또 우리 위원회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평화, 일치, 그리고 순결을 유지하는가를 알아보는 위원회로 위탁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장로교의 역사에서 평화, 일치, 순결의 건설적인 긴장을 유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4가지 사항들에 집중적인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예비적 코멘트: 저희 교단이 본 위원회에 구체적이며 곤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아는대로, 저희들은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명료하게 ‘예’ 혹은 ‘아니오’ 라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한 시대에 교회와 상황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숙고하는 균형상태에서, 깊이 저변에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적인 “신념의 흐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시점에도 위와 같은 신념의 흐름이 전체 교회에 의하여 균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존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는 이러한 예민한 임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교회의 정치형태를 만들어 왔던 교회의 신앙과 공동체의 제자도에 관한 경쟁적이며 또한 보완적인 주장들을 드러내어 성령의 움직임과 협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긴장과 조화의 문제들

미국장로교의 운영제도(규례)는 교단의 가장 강점 중의 하나로서 교인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데, 그것은 교회의 질서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신학의 전통은 크리스찬 개인의 삶 뿐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서 믿음과 행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개혁 신앙의 큰 주제들은 - 하나님의 주권, 은혜로서 구원, 선택, 직업, 만인 제사장론 - 교회의 구조와 정치와 운영에서 잘 반영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총회 위원회는 말하기를 “장로교 정치의 기초는 신학적입니다. 우리의 규례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단순한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공동의 삶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믿음과 질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²

오늘을 포함한 장로교 역사의 여러 기점에서, 믿음과 교회 질서의 관계가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문제를 지지하는 서로 다른 편의 소리들은 장로교의 규례가 만족할 만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 헌법과 여러 규례들이 너무 엄격하고 유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규례들이 너무 단정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개혁신학은 교회의 구조적 결함에 대하여 해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¹ 북장로교의 194 차 총회(1982)에서 구성된 역사적 원리, 양심, 교회 정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서는 회의록(1983, Part I, p 141ff)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² 역사적 원리, 양심, 교회 정치, 1983, page 5 (회의록, 1983, Part I, p. 145.)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드는 조직은 과오를 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장로교와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³

개혁신앙도 교회와 교인들의 부족함과 실수를 위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비 보고서’⁴에서 교회의 치유와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교회는 그의 부서지고 부활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교인들은 교회의 현재와 장래의 질서를 위하여 과거에 나타났던 은혜의 유형들을 관찰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고로, 본 위원회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장로교회의 역사를, 특별히 긴장과 해결을 경험했던 시대에 관심을 갖고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셨으므로, 신자들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개인적 욕망에 근거한 사리사욕을 분별함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교회의 규례와 결정을 숙고함에 있어 자기 비평과 분별의 영을 사용하기를 추구 했습니다.

다시말해, 본 위원회는 규례와 역사를 검토함에 경의를 갖고 접근했는데, 이는 교회의 구조는 단순한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희는 장로교의 제도가 성경과 신학에 근거할 뿐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의하여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개혁교회의 정치가 세계의 여러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본 위원회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결정방법의 유형들을 사용하는 유색인종들의 참여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규례의 적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원주민들의 경우, 전체 공동체의 복지에 대한 우려에 큰 관심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전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결정할 때에 개인의 의견은 쉽게 설득되어 집니다. 미국 원주민들의 경우 결정 마감일을 정하는 것은 생소한 것이지만, 일단 결정이 나면 그들은 여간해서 다시 그 결정을 논의하지 않습니다. 남미 문화의 경우도 오랜 시간을 통하여 대화하는 전체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교인들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흑인교회들도 창조적이며 놀라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과 더불어 전체적인 것, 그리고 전체를 요구하는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흑인교회에서 기도, 이야기 나눔, 그리고 진실된 느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혜와 연장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또 다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이 과반수 투표와 같은 민주적인 방법과 섞이기도 합니다. 한국 전통과 다른 전통들의 갈등이 있을 때를 포함한 모든 결정에는 인간의 뜻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강도 높은 성경공부와 기도가 뒷받침 합니다. 비백인 교인의 숫자가 급증하는 장로교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위의 것을 포함한 모든 전통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갑니다.

³ 이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여러 교단의 약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⁴ 교회의 평화, 일치와 순결을 위한 신학위원회에서 미국장로교 216 차 총회(2004)에 제출한 보고서. (회의록 참조, 2004, Part I, pp 638-43.)

모든 것들이 기대 됩니다.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법도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은 인간의 신실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옛 것과 새로운 것의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교회는 교회가 안고 있는 도전들을 다루는 정책과 운영을 재조정하기에 자유로와야, 아니 오히려 필요로 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는 교회의 역사와 규례를 연구함에, 특별히 불일치와 불화의 시점들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머리에 두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장로교인들이 어떻게 교회 질서의 신학적 원리와 수행 가능한 실행을 연합 시켰는가를 이해함; 분쟁을 해결함; 우리 전통을 희생하게 하는 과도한 것 -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 을 어떻게 조정하였는가. 이미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긴장과 조화의 문제점들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적인 긴장의 관계가 유지될때, 네쌍의 중요한 주제가 장로교인들로 하여금 격심한 토론과 신실한 목회를 감당하면서도 상대적인 일치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제들 간의 균형이 깨질 때 불화는 해결하기가 더욱더 어렵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가지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에 관한 공동체적 분별력을 존중하며 | <i>한편으로</i> | 성경의 권위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 |
| *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 주는 중요하고 필요한 믿음과 행동들을 굳게 지키며 | <i>한편으로</i> | 믿음, 예배, 경건, 증인과 봉사의 중요치 않은 면에서 자유를 인정함. |
| * 세상을 향한 독특한 장로교와 개혁교단의 증거사역을 유지하면서 | <i>한편으로</i> | 성도의 신분을 같이 나누는 다른 크리스찬들과 공동선교에 참여함. |
| * 교회정치에 있어 원천적인 관할권을 갖고있는 치리회의 권리와 책임을 유지하면서 | <i>한편으로</i> | 감독과 비평의 권한을 갖고 있는 치리회의 권리와 책임을 유지함. |

“개인의 책임을 주장하며 교육받은 지도력의 전통을 갖고있는 장로교 제도는 항상 논쟁과 마찰과 혹독한 불찬성을 잘 알고 있다. 마찰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갖는 결과이며 다른 시각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찬성이 반드시 신실함의 증거가 아닐지 모르고, 우리들이 어떤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이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질수록 우리는 아마도 의견의 대립을 가질른지도 모른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현실에서 성서적인 평온함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 우리 앞에 항상 놓여있는 세계의 가치 즉, 평화, 순결, 일치하는 항상 긴장 가운데 있다. 분쟁이 없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값을 치르거나 난제들을 회피하거나 몇사람의 의견에 무작정 추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다. 교회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그 다양성은 여러 다른 의견으로 표현된다.” (역사적 원리, 양심과 교회 정치, 983, 6; 회의록 참조, 1983, Part I, p. 147)

I.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에 관한 공동체적 분별력을 존중하며

한편으로

성경의 권위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느 법도 심지어 교회의 법도 신자의 가슴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을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 관하여 교회의 종교회의들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⁵, 미국 장로교는 “... 모든 종교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판단권리가 보편적이고 분리시킬 수 없는 것.”⁶ 이라는 사실은 강력하게 재 확인 합니다.

동시에, 개혁교단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항상 고독한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제자들과 회중과 교회의 치리기관들을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분별과 성령의 능력이 상호간의 가르침과 도전의 훈련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어떠한 개인의 판단도 그것이 다른 신자들의 개인적인 판단들과 한 몸인 공동체 전체의 판단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올바르고 신실한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상호간의 책임과 확인을 따르는 이러한 방침은 근본적이고 독특한 장로교의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종종 분별의 핵심적인 장소로 인정되는데, 그것은 개인의 시각을 무시하거나 무효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가 개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만들고 형성하고 교정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반대로 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고, 교정되기 때문입니다.

⁵ “사도시대 이래 모든 대회나 평의회는 전체회의든지 특별회의든지 막론하고 과오를 범할 수 있으며 그 전례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신앙이나 행동의 법칙이 되어서는 안되며, 신앙과 행위를 돕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75), *신앙고백서* 중에서

⁶ *규례서*의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리, G-1.0301(1) (b)

공동적 분별을 실행하는 장로교의 관습이 호소력이 있고 효과적인 반면에, 여러 차례 교회 역사에서 그 해결과 개선이 모호하게 남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의 해결책은 일반적으로 3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 전통이 있습니다:

- 1) **사랑으로 인내함.** 상당수의 소수가 대다수가 원하는 어떤 논쟁적인 문제의 답에 대하여 반대할 때, 교회는 대체로 문제에 대하여 좀더 명료한 답을 얻을 때까지 결정을 보류함으로써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⁷ 때로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문제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과 동등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두개의 전통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 2) **허용 범위, 특별히 교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북미주 장로교의 가장 오래된 논쟁가운데의 하나는 성직자 안수의 자격요건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회 후보생으로 하여금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의 조항들 중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견)을 선언하게끔 함으로서 해결되었습니다. 그후에 심사하는 치리회에서는 후보생의 이견이 근본적인 교회의 신앙고백에 어긋나는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담고있는 Adopting Act of 1729 는 이견의 근본 내용을 ‘교리, 예배, 그리고 치리’의 문제에 적용 하였습니다. 장로교 역사의 여러 정점에서 교회는 관용을 세개의 모든 차원에서 허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urch)와 1801 년에 세운(다시 1808 년에 확인) Plan of Union 에 의하면, 장로교회가 개척지역에서 활성화된 선교에 참여하기에 회중교회의 규례가 더 적합하다면 이의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비록 이러한 특별조항으로 생겨난 큰 다양성이 교회를 두개의 적대적인 당파(New School/ Old School 의 나뉘, 1837)로 나누었지만, 1869 년의 재결합은 교회의 믿음과 질서에 있어 유연성의 중요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재결합 합의문서는 말하기를 교회와 그 가르침과 규례는 “... 정확해야 하지만 배타적이어서는 아니되고; 한정적이나 고정적이어서는 아니되며; 구체적이나 완고해서는 아니되며; 진보적이나 방종해서는 아니되고; 그리고 보편적이나 자유주의적 이어서는 아니된다.”⁸ 하였습니다. *신앙고백서*의 채택과 그와 관련된 안수 서약에의 변화 후, 지난 수십년 간, 상당한 신학적 포용성이 안수하는 기관의 규정이 되어왔습니다.⁹

⁷ 이 원리는 고백적인 교회를 대항하는 가장 무거운 문제들을 다룰 때에 추천되고 또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고백서들이 말하고 의미하는 것으로: “교회에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진정한 공감대가 가능하고 필요할 때까지, 고백들 간의 차이점들이 표출되는 것을 허락한다. 비록 어떤 문제에 관하여 과반수가 조금 넘는 다수가 과반수가 조금 못 미치는 소수를 투표로 이길수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것을 놓고 교회가 ‘장로교 전체가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일뿐 아니라 부정직한 처사이다.” (“Confessional Nature of the Church Report”, *신앙고백서*, p. xxiv) 이 문구가 1997 년 신앙고백서에 추가되기 오래 전에, 교회가 추천했던 과정인 -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 - 은 여러 교단들이 20 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수정할 때 지켜졌었다.

⁸ 회의록, PCUSA, 1868, p. 34; Plan of Union 1869 에 관하여는 Digest, 1886, pp. 57, 58, 99-106 을 참조하기 바람; 또한 회의록 PCUSA, 1865-1869, 회의록 과 보고서, p. 276 ff.

⁹ 1967 년의 신앙고백서 채택 이전에는 동의 질문(안수 서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신은 이 교회의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조직적인 교리를 담고 있다고 진실로 믿고 받아들입니까?”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람. 1966 - 1967, p. 144a, 질문(3).) 이 질문은 웨스트민스터의 기준이 유일한 교회의 기준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1967 년의 새로운 안수서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성경의 권위 아래서, ... 이

중증 장로교회는 그의 직원들과 교인들이 따르는 행동보다는 그 신앙에 넓은 관용을 베풀어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우에 교회는 교회의 규례가 요구하는 행동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수의 입장을 강제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섯개의 기본원리”의 갈등후 10년이상 지나서(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함), 보수파의 리더격인 J. Gresham Machen 는 권징을 당하였는데 그것은 1920 년대에 승리하지 못한 그의 보수적인 노선 때문이 아니라, 사임의 결정에 불응하며 Independent Presbyterian Board for Foreign Mission 의 지도자 자리를 지키려던 그의 의도 때문입니다. 후의 1970 년대에는 Walter Wynn Kenyon 의 UPCUSA 노회 가입과 Thomas T. Ellis 의 PCUS 노회 가입이 그들의 여성안수를 부인하는 입장 때문에 도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Keynon 만 유독히 권징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그러한 안수에 참여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비평가들은 말하기를, 특별히 지난 한 세기 동안, 행동 보다는 신앙에 허용되는 폭넓은 다양성의 증가 추세가 역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신앙과 행동, 진리와 의무의 관계”와 특별히 신앙과 행동의 균형을 긴장 시켰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교회는 장로교의 정체의 주된 표시로 “행동”과 “의무”에 의존하였습니다.¹⁰ 신앙적 신념이 행동에 의미와 형태를 만들어주고, 반대급부로 행동이 신앙을 깨우쳐주고 튼튼하게 만들었던 예전의 활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백적이며 신학적인 보완이 결여된 교회의 질서와 훈련은 쉽게 그 방향과 권위를 잃고 때로는 정치적인 간계로 타락하기도 합니다.

- 3) **평화스럽게 물러날 권리:** 장로교 제도에 들어있는 포용과 유연성은 교회의 “가입 규정과 목사와 교인의 자격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교회 내적인 치리의 전체적인 제도를 선언할...”¹¹ 자격을 축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 교인은 그의 양심이 허락치 않는 교회가 취하는 입장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항소할 수 있는 권리 - 사실은 책임 - 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결정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동의 하거나 혹은 피동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경우에 개 교인은

교회의 신앙고백들에 인도에 따라서,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입니까?”(규례서, 1967-1968, 49.043 참조) 1983 년의 미국장로교(PCUSA)를 탄생시킨 재결합의 계획은 두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고백에 나타난 개혁신앙의 중요한 교의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믿고 행동하게 하는 확실하고 믿을만한 해설이라고 믿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함에 이러한 신앙고백들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게 됩니까?” 그리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성경의 권위 아래서, 또 신앙고백의 인도를 계속적으로 받으며 당신의 임무를 다할 것입니까?” (남장로교와 북장로교의 The Plan for Reunion, 1981 (장로교 재결합을 위한 공동 위원회), G-14.0405c-d). 1979 년,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견해로, National Union 노회가입에 도전을 받았던 Mansfield M. Kaseman 의 경우, 노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총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이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안수서약은 “목사 후보생의 심사의 주된 목적은 신학적인 규정에 따르는가를 확인하는 것 보다는 후보생이 스스로 헌신적으로 신앙고백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함에 그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회의록, UPCUSA, 1981, Part I, p. 115).

¹⁰ 다음의 것을 참조하십시오. David B. McCarthy “The Emerging Importance of Presbyterian Polity” in *The Organizational Revolution: Presbyterians and American Denominationalism*. Edited by Milton J Coalter, John M. Mulder and Louis B. Week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2, pp. 279-306.

¹¹ 교회규례의 역사적 원리, *규례서* (G-1.0302).

양심을 근거로 하여 평화스럽게 물러날 수 있으며, 교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¹²

중중 철회나 분열과 같은 결렬한 절차를 피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유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원리들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이미 밝힌 두번째의 긴장 요소가 바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과 행동이 신앙에 절대 중요한 것이며, 어떤것이 중요치 않은 것인가.

II.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주는 중요하고 필요한 믿음과 행동들을 굳게 지키며 한편으로 믿음, 예배, 경건, 증인과 봉사의 중요치 않은 면에서 자유를 인정함

“비록 대회가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강요하는 어떠한 우리의 신앙적 권위도 인정하거나 원하지 않지만, 오히려 이러한 강요에 대한 불만족과 혐오를 고백하며,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법적인 힘과 권위도 단호히 거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받아주신 것 처럼 서로가 서로를 기꺼이 받아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인정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거룩한 성례의 교체를 인정하되, 우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한때는 사탄에게 넘어갔던 믿음을 우리 사이에 순수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회에 속한 모든 목사와 앞으로 대회에 들어올 모든 목사들은 소/대 요리문답을 포함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기독교 교리의 가르침과 조직의 바른 형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조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찬동할 것을 선언하고, 그 고백과 요리문답이 바로 우리의 신앙고백이라는 것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지역내의 모든 노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명기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조항이라는 사실을 서명으로 아니면 구두로 선언하지 않는 어떠한 목사 후보도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동의하는데, 이는 그러한 목사와 후보들이 제일 좋은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대회의 어느 목사나 혹은 목사가 되려는

¹² 이 원리는 교회의 역사에서 일찍부터 확립되어 왔습니다: “어떤 결정이 다수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될 때 개교인은 능동적으로 동의 하거나 아니면 피동적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아니며 그의 양심이 두개의 결정 중 어느 것도 따를 수 없게 한다면 충분히 논리적인 이해와 항의를 한 후에,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스럽게 교회로부터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기관)가 필요불가결한 교리나 장로교 정치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에만의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Plan of Union or The Reunion of 1758, 1758, Synod of New York and Philadelphia, p. 3; see also *Record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inutes of the Synod of New York and Philadelphia 1758, p. 286; also *The Presbyterian Digest*, 1907, William E. Moore, compiler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 School Work), p. 28.)

후보가 위의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의 어떤 조항이나 여러 조항들에 대하여 주저함이 있다면, 그는 위의 선언을 할 때에 이에 대한 그의 느낌을 노회나 대회에 밝힐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나 대회가 판단할 때 그의 주저함과 실수가 교리와 예배와 교회정치의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한 면들에 국한된 것이라면 그를 노회나 대회의 지역 안에서 목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노회나 대회가 판단할 때 목사나 후보의 주장이 신앙의 중요하고 필요한 조항에 위배된다면 노회나 대회는 그를 같이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대회는 엄숙하게 밝히기를 우리중 어느 누구도 우정과 친절과 형제애에 관한한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진 것처럼 그들의 다른 생각들을 중상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The Adopting Act, 1729)¹³

“총회가 1910, 1916 그리고 1923 년에 정한 소위 “다섯개의 항목들” 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총회가 이러한 교리를 뽑아내어 “중요한” 것이라고 천명하는 것을 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차별적인 선택은 정당하지 못하며, 어떠한 교리들은 성경의 관점으로 모범의 관점으로나 바르게 표현되지 못하였고, “중요한” 이라는 단어 자체도 불분명하여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누구를 위한 무슨 “중요한” 것이란 말인가?” (1925 년의 특별위원회, 1926 년의 보고서, 회의록, 1926, Part I. p. 69)

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나라에 첫번 노회가 시작된지 불과 10 년이 조금더 지나서, 대회 (General Synod: 모든 장로교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치리기관) 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을 목회의 기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1729 년의 결정을 “Adopting Act” 라고 부름). 모든 목사후보들은 반드시 이 문서에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구두로 이 고백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대회의 모든 안수받은 자들은 이러한 고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교리를 신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동시에, 교회와 세속 권위과의 연관성과 관련된 어떠한 조항들은 미국 초기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시각 때문에 대회는 이러한 조항들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대회는 또한 어떤 교인들이 다른 여러 조항들에 관하여 유보적인 자세를 취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이미 소속된 목사들과 장래의 목사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조항들에 관하여는, 그들의 주저함을 선언할 것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는 투표에 의하여 그러한 주저함들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대회가 그 조항이 중요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게되면 그는 대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결코 대회가 “중요하고 필요한” 조항들이 어떤 것인가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Adopting Act 는 후보를 안수하는 기관이 어떤 특정한 조항들이 전체적인 믿음의 조직에서 “중요하고 필요한가” 를 결정하도록 일임하였습니다.

¹³ Records of Pres. Ch., 1927, 94f, in Armstrong, Maurice W., Lefferts A. Loetscher and Charles A. Anderson, editors. *The Presbyterian Enterprise: Sources of American Presbyterian Histo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56, pp. 31-32.

비록 Adopting Act 가 후에 수정이 되었지만, 이것이 세운 유형은 장로교의 역사와 정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들과 같은 고백적인 교회에서는 어떠한 믿음이나 행동들이 교회의 신학적 보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동시에, “서로 인정하는 한 조직의 한계와 경계 안에서 설명되고 이론화 하는 방편으로 의견의 차이는 항상 존재하며 수용됩니다...”¹⁴ 미국장로교 내에서 한번의 장황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총회들 (북, 남, UPCNA) 은 항상 전체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교리들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 이라고 결정하는 것을 거부 하였습니다.

미국장로교의 이 사건은 1910 년에 총회가 다섯개의 근본적인 교리 (“다섯개의 항목” 이라고 불리움) 를 채택하고 후에 두번의 총회 (1916 년과 1923 년) 에서 확인함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다섯개의 항목”은, 후보들에게 이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노회들에 대하여 총회가 목사들의 이단 재판과 미취임 유자격 목사들의 해임을 명령하면서, 큰 분란으로 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한 장로교회의 분열은 본 위원회의 전신인 1925 년 위원회 (“교회의 평화, 일치, 순결과 발전을 위한”) 의 임명으로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는 근본적인 내용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섯개의 항목이 신학적으로 옳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교회에게 예로부터의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두가지 사항을 강요하였습니다.

* 안수하는 기관의 권리인 “후보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상이다.”¹⁵

* 어떠한 회의나 혹은 안수하는 기관도 신앙고백이나 성경이 “설명”하는 교리적인 진술들을 “중요하고 필요한 조항들로 정립할 수 없다.”¹⁶

위의 것들을 같이 보면, 두개의 원칙은 Adopting Act 를 다시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신앙고백의 중요하고 필요한 조항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교회가 같이 공유하는 고백적인 기준들을 이해하는 것에 의거하여 안수하는 노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관들의 사법적인 전례들이 이러한 유형을 재확인하고 되는데: 특별한 상황에서 정의 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교의들이 있습니다. 이미 열거한 Kaseman 의 경우, 총회의 상임사법 전권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1980 년에 첫번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교리들은 그 “중심” 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National Capital 노회가 Kaseman 씨를 문제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의 두번째 판결(1981 년)은 노회의 Kaseman 씨를 받아 들이기로한 결정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노회가 그를 충분하게 심사하였다는 근거에 의해서 임.)¹⁷ Thomas T. Ellis 씨가 아틀란타 노회로부터 스와니 노회로 이적 하려고 함에 두번째의 제재를 받았을 때, 그는 1967 년의 고백이 “그가 교육받고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인도했던 개혁신앙의 진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스와니 노회 이적은 도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1984 년의 판결을 통해

¹⁴ 회의록, PCUSA, 1868, “Proposed Terms of Reunion Between the Two Branch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 33. For Plan of Reunion of 1869, see *Digest*, 1886, pp. 99-106; also 회의록, PCUSA, 1865-1869, p. 276ff.

¹⁵ 회의록 PCUSA, 1927, Part I, p. 79.

¹⁶ 동 회의록., p. 81.

¹⁷ 회의록, UPCUSA, 1980, Part I, p. 94; 회의록, UPCUSA, 1981, Part I, p. 116.)

“Ellis 씨의 의견상의 1967년 고백 부인은 노회 가입을 허용하는 노회의 결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한 이유라는” 결론으로 노회의 권리를 지지 하였습니다.¹⁸

III.

세상을 향한 독특한 장로교와 개혁교단의 증거사역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성도의 신분을 같이 나누는 다른 크리스찬들과의 공동선교에 참여함.

“교회의 일치는 주께서 주신 한 은총의 선물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선교적 사명에 충성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규례서, G-4.0201)

“각기 개성과 재능과 이해의 다양성을 다 하나로 단합시켜서 가시적 동일성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일치늘 보이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다. 또한 그것은 일치가 성취된 한 방편이기도 하다...” (규례서, G-4.0203)

“하나님의 백성의 제도들은 각기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그들의 사명이 요구하는데 따라 변하며 달라진다. 교회의 통일은 형태와 잡다성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형태들이 굳어져서 종파적인 분파들과 배타적 교단들과 경쟁적 당파들이 되도록 허용될 때에는 그 통일이 잠적하고 또 왜곡된다...” (신앙고백서, 1967년 신앙고백, 9.34)

미국 장로교회는, 그들의 불일치와 분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 시키도록 우리 모두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믿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로 뭉쳐 왔습니다. 그 사명을 추구함에 있어서 교회와 세상은 모두 개혁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같은 신념 이상 외에 어떻게 이 증거사역을 최상으로 이룰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장로교의 견해들은 갈라져 왔습니다. 장로교의 한 줄기는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속적인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세상을 위하여 다음 세대의 교회에 전해줄 수 있는 분명하고 논리정연한 복음을 유지함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일반적으로 고수해 왔습니다. 우리와 다른 기독교 전통의 신자들과 협력이 가능하지만, 오직 그러한 공동의 노력이 개혁신앙의 신실한 가르침을 희석시키지 않거나 교회 조직의 기본적인 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다른 하나의 줄기는 변화와 개혁은 죄와 고통으로 물는 세상의 “어지러움”에 교회가 깊이 관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견해는 첫번 미국의 노회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부분은 고백적인 신앙과 장로교의 독특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의 협조가 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 하지만, 오직 그러한 연대는 개혁신앙을 희석 시키거나 장로교의 교회질서와 많이 다르지 않을때에 가능합니다. 바로 그 같은 노회에서, 또 다른 부분의 장로교인들은 다른 접근을 시도 합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크리스찬들과 공동으로 노력할 뿐 아니라 때로는 장로교 특유의 미세한 점들을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¹⁸ 회의록, 1985, Part I, p. 116.

위의 두 가지 견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이 협조하다가 후에 분열했던 한 극적인 예가 바로 1801 년과 1808 년에 맺은 회중교회 (Congregationlists)와 장로교 (PCUSA)의 Plan of Union 약조입니다. 초기에는, 총회가 이 안(案)을 지지했습니다. 그 목적은 개척지에서의 좀더 왕성한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안은 양측의 사역자들에게 “피차간의 인내와 수용의 정신”을 엄하게 강요했습니다. 이 안에 담긴 조항들은 양측의 목사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개 교회는 그들의 상급 치리회 아니면 양쪽 상급 치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쪽 교단의 조직과 훈련 방식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약조로 인하여 미국장로교는 뉴욕 북부지역, 오하이오 그리고 서부지역 쪽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약조 아래에서 만들어진 교회와 노회의 혼혈적인 속성은, 이 약조가 성경이 가르치는 신학적 교리와 교회정치의 유형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1837 년, Old School 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 그룹은 특별회의를 가지고 비장로교단의 선교 단체들과 “질서없고 미숙한 [교단] 회의”의 영향은 물론 Plan of Union 아래서 시작된 일부 교회들이 갖고있는 교리적인 오류를 비난하는 Memorial 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¹⁹ Old School 이 고수했던 남용은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의 “부자연스런 혼합의 결과” 이었습니다. 몇 달후의 총회에서 과반수를 조금 넘는 숫자를 가졌던 Old School 총대들은 Plan of Union 아래에서 시작된 대회, 노회, 교회는 더 이상 교단의 교회가 아님을 선언 했습니다. “절단된” 대표들은 물러나와 같은 공식적인 이름 (PCUSA) 으로 그들을 잘라낸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장로교의 New School 로 알려집니다.

수십년 동안 이 두 교단은 경쟁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심지어 같은 마을에 서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종종 한 교단의 목사는 다른 교단의 목사와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1870 년, 북 Old School 과 New School 은 “상호간의 신뢰와 사랑”의 정신으로 다시 결합 합니다. 재결합 동의사항은 양쪽 “School” 의 주장을 조심스레 통합했습니다: “정통성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장함.” 이 “다양성과 조화, 자유와 사랑”의 정신과 섞이게 됩니다.²⁰

10 년 이내에, 선교에 있어서 양쪽의 견해가 다시 갈리기 시작하며, 55 년 후에는 기나긴 갈등의 고통 아래에서, 교회가 다시 정통과 자유의 문제를 놓고 분열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재결합과 그의 결과 (교회들의 숫적 증가와 강렬한 선교, 별다른 논란이 없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수정) 들은, 독특한 개혁신앙의 진리를 강조하는 성향과 다른 크리스찬과의 동역을 통한 믿음과 행동에 있어 보편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성향의 두가지 견해 모두가 장로교를 역동케하는 원천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모두 교회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촉구 함으로, 한쪽에서는 장로교회의 독특한 메시지를 유지함이 필요한 것을 계속 상기 시켰고, 다른쪽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신실함과 공통적인 크리스찬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¹⁹ Memorial 은 또한 비난하기를 “일반의 품위를 손상하는 방식의 예배가 진행되었다; 종종 여성들이 난잡하게 섞인 회중들의 기도를 인도하며, 대중을 가르치기도 했음.”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834-1837, 회의록과 보고서, p. 422, 430, 470-72

²⁰ 회의록, PCUSA, 1869, pp. 26-41, ESCP. 36-3; For Plan of Union 1869. see *Digest*, 1886, pp. 99-106; also 회의록, PCUSA, 1865-1869, 회의록과 보고서, p. 276ff

19 세기의 장로교 역사는, 분열의 정신이 교회를 주도할 때에 갈등의 근본은 신학적인 차이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들은 교회의 정치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 여러 계층의 교회정치를 어떤 권위들이 다스리는가의 싸움으로 표출 되었습니다. 본위원회가 밝히고자 하는 마지막 주제는 장로교회의 삶을 조정하는 결정을 누가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IV.
**교회정치에 있어 원천적인 관할권을 갖고있는 치리회의
권리와 책임을 유지 하면서
한편으로
감독과 비평의 권한 갖고 있는 치리 회의
권리와 책임을 유지함.**

“장로교 치리 질서의 성격은 권한과 책임을 서로 지는 체제이다. 한 교회든 여러 교회든 간에 다스릴 권위를 가진 치리회의 체제는 교회의 일치를 나타내는 구조 안에서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규례서, G-4.0302).

“지난 1926 년 총회의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아직 완전하게 조사되지 못한’에 대한 질문들은 3 가지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생과 목사안수의 면허를 주는 사람에 관한 총회와 노회의 상대적인 권위. 2. ‘검토와 통제’ 라는 문구 아래있는 윗기관의 권위, 특별히 총회의 권위. 3. ‘필요하고 중요한 조항들’ 의 정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총회의 권위.”

“위의 세가지 질문들은 한 가지 원리와 관련 되는데: 소위 부르는, 총회의 헌법적인 권위. ...” (1925 년의 특별위원회, 1927 보고서, 회의록, PCUSA, Part I, pp. 58-59).

이 나라에 장로교회의 시작 때부터, 치리회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이견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초의 논쟁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어떤 치리회의 권위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번 미국 노회 (1706) 은 주로 뉴잉글랜드, 스코트랜드와 아일랜드의 안수 받은 성직자들로 구성 되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사람들은, 조나단 딕킨슨(Jonathan Dickinson)의 지도력 아래, 모든 치리회의 권한을 제한 하는 것을 선호하는 청교도의 정서에 동감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자체가 목회의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 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을 교회의 교리와 예배와 정치에 삽입할 수 없고, 교회는 성경의 권위적 해석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스코트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온 또 다른 그룹은 회의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 뿐 아니라 성경이 “오류가 없는 규칙” 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글자” 는 신조를 만들고 고백서를 채택하며 교회 전체의 삶을

주도함으로 교회를 인도하기에 믿을만한 폭넓은 대표들로 구성된 모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²¹ 이와 같은 견해는, 미국에 장로교회 총회가 구성 되었을 때인 1797년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으며, 교회의 “교회정치의 역사적 원리”에 다음과 같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다른 회중이 집단적으로 모여 교회라고 단호히 불리우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룬다; 그 교회의 상회나 상회 대표가 하회를 치리하거나 그 안에서 발생하는 논쟁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곧 같은 방법으로 전체 교회의 대표가 각 부분과 연합된 전체 분야를 다스리며 결정해야 한다; 곧, 다수가 다스려야 한다. 따라서 상소 문제가 생기면 하회에서 상회로 상정되어 전체 교회의 공동의 지혜와 연합된 의사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과 절차를 위해서는 사도들의 모범과 초대교회의 관례가 권위로서 인정된다.

이렇게 총회의 권위를 높이 인정하는 시각은 PCUSA가 1958년에 위와 같은 시각을 항상 갖고 있던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North America와 합병할 때에 다시 한번 강화 되었다. 오늘날 이 조항은 미국장로교의 규례서에 역사적 원리로 굳게 서있습니다.²²

그러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장로교의 전통에서의 상급치리회의 권위는, 중요한 안건들이 발제되는 (당회와 노회들) 치리회의 권리를 동등하게 강조함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역사에, 특별히 총회가 구성되고 헌법이 채택되기 전에 벌써 노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서로를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²³ 이러한 것에 근거하여, 노회가 목회 후보생의 심사와 안수를 포함, “그의 돌봄 아래에 있는 회중들의 영적 문제들과 관련된 모든 교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주된 장소로 설립된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고백과 헌법의 모든 수정은 노회들의 다수 (혹은 이상)의 찬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9세기 중반이후부터, 노회들은 다른 노회들에서 안수받은 목사들을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²⁴

²¹ (John Thomson), An Overture Presented to the Reverend Synod of Dissenting Ministers, Sitting in Philadelphia, in the Month of September 1728 ([Philidelphia]: printed for author, 1729): 15-16, 18-19

²² 규례서, G-1.0400

²³ 종종 주의하는 것처럼, 총회가 구성되기 전에 73년 동안 존재했던 the General Synod는 아주 색다른 치리회였습니다. 모든 장로교 목사는 그곳에 소속되었고 모든 교회들은 총대들을 모임에 보냈습니다. 1925년의 위원회는 말하기를 “교회 전체. 최고의 권위가 그것에 본래 속했다.” 했습니다. (회의록, PCUSA, 1926, Part I, p. 81).

²⁴ 19세기에 Old School/New School 분쟁이 정면으로 대결하기 이전에는, 목회자 한 노회를 떠나 다른 노회를 소속을 옮길 때에 재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1835년, Plan of Union의 노회들의 목사 안수절차 (이들은 오직 교리의 “조직”이 아닌 “내용”만을 받아들인, 아니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당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목사들을 안수했을지도 모름)에 위협을 느낀 Old School 측은 노회가 이미 안수받은 목사를 받아들일 때에 재심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총회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1837년 총회는, Plan of Union의 노회들을 추방한 후에, 모든 노회들이 모든 장래의 회원들을 심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1869년의 Pland of Reunion은 노회의 회원이 될 후보들을 심사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필수로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 PCUSA, 1865-1869, 회의록과 보고서, p. 276ff)

당회와 노회의 활동들은 상급 치리회의 검토와 수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이 미국장로교의 첫번 헌법에 주어졌습니다:

총회는 교리와 훈련의 논쟁적인 면에서 충고적인, 이성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어느 교회, 노회, 혹은 대회에 대한 훈계, 경고, 잘못된 교리에 대한 증거,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권면을 할 수 있으며,...분열을 초래할만한 논쟁이나 토론을 중단 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법의 개혁을 위한 충고나 노력에서; 모든 교회의 자선, 진리와 거룩함을 위하여...²⁵

그러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러한 권한의 범위와 한계가 가장 심각했던 장로교의 논쟁들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 중의 하나를 직면했던 1925년의 위원회는 그들의 최종 보고서에서 노회의 권한이 “최고”이며²⁶ “일반적이고 고유적인” 반면 총회의 권한은 “구체적이고 대리적이며, 노회에 의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한계적이라”며 노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편에서 수습하게 되었습니다.²⁷ 1983년의 PCUSA를 탄생시킨 UPCUSA와 PCUS의 연합도 노회의 권리를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1861년에 남장로교(PCUS)를 구성한 신학자들은 한 세기 전의 조나단 디킨슨을 연상케하는 입장을 취하여, 교회는 오직 성경에 합당한 것들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CUS는 모든 치리회의, 특별히 노회 위의 기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PCUS는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최종 항소할 수 있는 장소로 총회를 인정하였지만, 그들의 총회에 대한 통념적인 생각은 “교훈적인, 자문적이고 충고적”²⁸이며, 그들은 이러한 전통을 - UPCNA가 반대적인 것을 가져온 것처럼 - 오늘의 미국장로교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원천적인” 관할권 (누가 안수를 받을 것이며, 헌법이 어떻게 수정될지 아닐지와 같은 기본적인 결정을 내리는) 을 가진 치리회들과 감독과 검토의 권한을 가진 “상급” 치리회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노회, 아니면 대회나 총회) 들과의 긴장은 오늘날의 교단적인 구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PCUS의 전통과 노회의 권한과 힘을 점진적으로

²⁵ 미국의 장로교회의 헌법, 1789, 11 장. 총회의 부분, Section V.

²⁶ 회의록 PCUSA, 1927. Part 1, p. 79.

²⁷ Ibid, p. 62.

²⁸ 많은 권한에 관하여, 총회에 대한 PCUS의 반감의 예는 1898년의 제안에 반발하여 내어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기준 교리의 “근본원리”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장로교보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PCUS 총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있는 근본원리 채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안수받은 사람들이 신봉해야 하는 교리적 조직이 신앙고백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총회가 “조직의 근본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선언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법적 절차를 거쳐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수 후보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노회가 기능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해제를 함에 있어서 필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A Digest of the Acts and Proceeding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1861-1965 [Atlanta, Georgia: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1966, p. 117. 회의록 참조, PCUS, 1893, p. 223.)

강조하는 북쪽의 전통이 뒤섞인 현실은 총회 선교부의 발전으로 인한 요인과 더불어 총회가 현저하게 나타나는²⁹ UPCNA 의 전통에 의하여 상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총회는 제안 보다도 많은 것을 하기에는 인력과 재정을 공급하기에 부족하므로 노회와 교회들에게 협조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치를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반, 전국적인 교회의 부흥은 제안할 뿐 아니라 하급 치리회들의 협력된 행동을 강요할 수 있는 관료적인 조직과 재정 확보 장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총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여성안수와 같은 교회의 삶에서의 중요한 변화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은 인식 가능한 총회의 힘을 정치형태에 담긴 실제적인 권한과 특권에서가 아니라면 적어도 교인들의 시각에서 크게 확산 시켰습니다. 총회의 힘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과 선호도는 총회의 중앙집권적인 권한이 사라진 오늘날에도 교회의 한 곳에서 남아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³⁰

상급치리회와 하급치리회의 상대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노회와 당회가 안수받을 사람을 심사하고 안수하는 것과, 교회와 노회의 회원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를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하급치리회는 행동을 위하여 헌의안을 통한 탄원을 상급치리회에 낼 수 있습니다. 노회는 또한 교단의 헌법을 확인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투표를 할 추가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총회, 대회, 노회는 “상급”치리회로서 특정한 경우에 하급 치리회의 결정들을 감독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회가 하급치리회를 구속하는 (총회가 동성애자를 안수하는 문제에 관하여 분명한 지침을 주어서, 1978 년 이후 격렬한 논란이 되었던) 헌법의 권위적인 해석을 발표할 권한이 총회에게 있는가 하는 오래된 논란은 1987 년에 있었던 헌법개정에 따라 그 권한을 회의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규례서, G-13.0103r) 에 넘김으로 오늘날에는 수습이 되었습니다. (회의록 참조, 198, Part I, pp. 32, 143-44.)

어디에 이견이 있습니까? 최근 논란의 대부분은 치리회의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커다란 교단이 안수와 같은 국부적인 결정 - 교단이 구체적인 헌법의 조항을 통하여 아니면 행정적이나 사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 을 통제하는 것이 현명치 못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교단의 정책이 너무 느슨하여 좀더 엄하게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분열은 간단하게 두개의 줄기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어떻게 체제가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어떤 그룹의 입장은 정치의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단의 정책에 관한 찬성이나 반대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단의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정책에 관하여 교단 차원의 통제와

²⁹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North America, *The Government and Discipline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North America* (Pittsburgh, PA: United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80), Part I, Chapter V, Article IV. 1, p. 606.)

³⁰ Craig Dykstra and James Hudnut-Beumler, “The National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Protestant Denominations: An Invitation to a Conversation,” in *The Organizational Revolution: Presbyterians and American Denominationalism*, edited by Milton J. Coalter, John M. Mulder and Louis B. Week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pp. 307-331.

강제집행을 선호하면서, 교단의 정책에 반대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부적인 결정방법을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결론적 추신

“미국 장로교의 정치는 스코틀랜드(아일랜드) 장로교회(어떤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 처럼)의 것도 아니고, 뉴잉글랜드 청교도주의(다른 어떤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 처럼)를 약간 수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으로, 논쟁과 타협을 통하여, 교회의 일치를 지키며 교회가 새롭게 급속히 성장하는 개척적인 이웃을 대할 때의 도전들을 대할 능력을 갖기 위하여, 대다수의 교회가 - 모든 인종과 지역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 원칙에 동의하며 세부사항의 타협이 필요함을 절감하여 탄생시킨 것입니다.” (역사적인 원리, 양심과 교회의 정치, 1983, p. 4; 회의록 참조, Part I, pp. 144-45)

“이러한 문제들을 담은 폭 넓은 원리들에 덧붙여 그것들에 달려있는 무시할 수 없는 감상적인 관심들이 있습니다. 문제에 포함된 것은 장로교 구조의 전체적인 이론입니다. 장로교회는 일치된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단위들로 느슨하게 구성된 연합체인가? 대안이 되는 해답은 두개의 상반된 극단을 대표하지만 두개중 어느 것도 정확하고 충분하게 우리 교회의 조직을 설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1925-1927 보고서; 회의록 참조, PCUSA, 1927, Part I., p. 59.)

장로교 역사에서 조화를 유지했던 시간들에 대한 평가는 미국장로교가 근거로 하고있는 다양한 줄기의 개혁 전통은 현대사회의 압박을 맞아 교회의 평형상태와 신실한 선교를 이루려는 교회의 노력을 지원하는 원리와 유형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안합니다. 장로교회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는 어떤 기준들은 특별히 이 시점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정치형태와 신앙고백을 하나의 헌법에 융합시켜 정치제도를 신학과 연합 시켰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유창한 믿음의 고백과 같은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로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장 깊은 신념과 깊은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규례는 단순한 정치이며 우리의 신학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핵심적인 교리에 근거할지라도 완전한 규례는 없습니다. 개혁전통은 교회의 삶과 질서가 죄에 훼손되는 길을 깨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의 신앙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규례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몇 개의 결론으로 인도합니다.

- *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정치가 공동체로서의 크리스찬 생활의 가시적인 구체화가 되기를 강렬히 바라고 있음.

- *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교회구조, 법적 조항과 정책에 있어서 계속되는 개혁의 필요를 인정하면서, 교회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교인자격과 안수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임.
- * 규례는 교회로 하여금 갈등을 신학적으로 다룰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함. 신학적 차이에 근거한 중대한 갈등을 기술적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함. 신학과 규례의 필연적인 관계가 교회의 최근 역사에서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예비보고서에서, 본위원회는 평화, 일치와 순결은 성령의 선물임을 재차 확인 하였습니다. 우리가 했던 장로교 역사의 평가는 어느 교회이든 노력해서 얻은 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장로교인들은 정기적으로 혹은 때때로 우리 신앙고백과 질서와 훈련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경멸하게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낸 비판과 화해를 받아들일 것인가 - 는 제자도와 신앙의 연단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진리와 능력의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에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평화와 일치와 순결이 이러한 도전을 맞아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Milton J Coalter
 Barbara G. Wheeler
 John Wilkinson